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관계기관 한내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따라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명 이상 8명 이하,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내유치원에서는 2021학년도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을 초과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

[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황

학년도	교원위원 (A)	학부모위원 (B)	합계 (C=A+B)	원아수	원아수에 따른 적정 위원수	비고
2021	4명	6명	10명	98명	5명~8명	2명 초과 선출

【조치할 사항】

- ① 한내유치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